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9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2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(‘22.1.13.시행)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·협력 등에 관한 법적근거(제193조)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명시함(안 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의원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 <u>의회의원의 외교활동</u> 지원을 위하           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        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            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</u>  <u>법</u>」 제193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</u>  <u>의회의원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